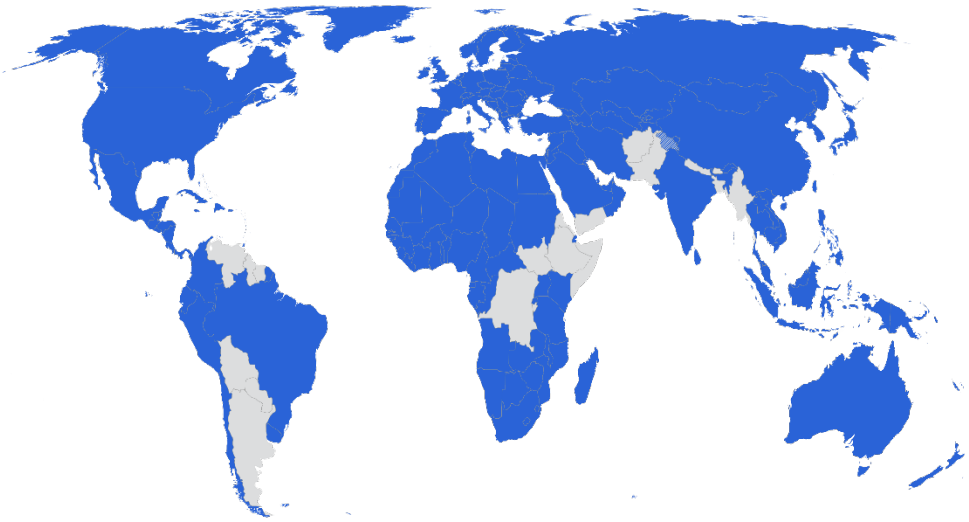
WIPO PCT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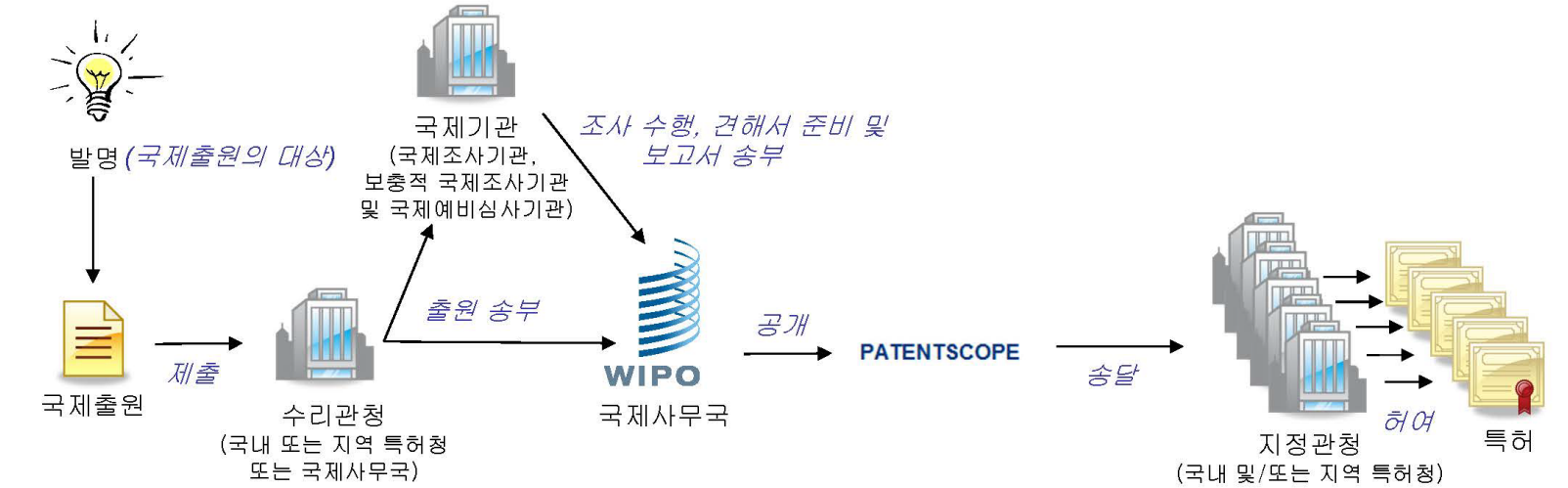
PCT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의 발명의 보호:
특허협력조약(PCT)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6 년 8 월

PCT 제도 개요


발명 (국제출원의 대상)
국제출원
제출
수리관청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
국제기관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조사 수행, 견해서 준비 및
보고서 송부
출원 송부
WIPO
국제사무국
공개
PATENTSCOPE
송달
지정관청
(국내 및/또는 지역 특허청)
허여
특허


우선일로부터의
개월 수:0
12
16
18
22
28
30
국제단계
출원인이
보충적 국제조사
청구(선택사항)
국내단계
특허청에 출원
제출
(우선일)
PCT 수리관청에
국제출원 제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송부
국제출원,
견해서
및
국제조사보고서
공개
출원인이
국제예비
심사청구서
제출(선택사항)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제2장 또는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선택사항)
PCT 국내단계 진입
(출원인이 발명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

서문

특허협력조약(PCT)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PCT 절차를 출원인의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질문, 추가 정보, 컨택포인트는 질문 2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특허협력조약(PCT)이란 무엇인가요?

PCT 는 현재 159 개 체약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입니다.[1] PCT 를 이용하면 여러 건의 국내 또는 지역 특허출원을 개별적으로 하는 대신, 한 건의 "국제"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허여는 이른바 "국내단계"에서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의 관할하에 이루어집니다.

PCT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출원: PCT 방식요건을 준수하여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 또는 WIPO 에 한 언어로 국제출원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국제조사: "국제조사기관(ISA)"(세계 주요 특허청 중 하나)은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 특허문헌과 기술문헌을 비롯한 관련 선행기술을 파악하고,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국제공개: 국제출원일로부터, 또는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8 개월이 지난 직후 국제출원 내용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선택 사항): 주 조사를 수행한 제 1 국제조사기관이 서로 다른 언어와 기술 분야에 걸친 선행기술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는 공개 문헌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제 2 국제조사기관이 파악합니다.

국제예비심사(선택사항):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이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견해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정한 출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특허성 분석을 수행합니다.

국내단계: 국제 절차의 말미, 즉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최선 출원일로부터 통상 30 개월이 되는 시점에 출원인은 특허 취득을 희망하는 각 국가의 국내(또는 지역) 특허청에서 특허 취득 절차를 개시합니다.

2) 어떻게 하면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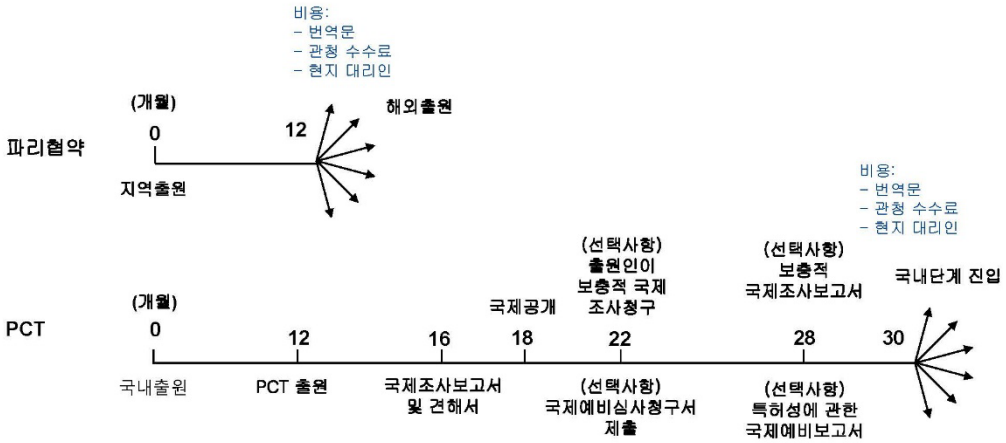
특허는 속지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각 국가의 영역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a) 직접 또는 파리협약 루트: 발명의 보호를 원하는 모든 국가들에 직접 동시에 개별 특허출원을 하거나(일부 국가에서 지역특허 절차 이용 가능), 파리협약국(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후 그 최초 특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다른 파리협약국들에 개별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상기 모든 후출원 국가에서 최초 출원의 출원일을 주장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질문 11 참조).

(b) PCT 루트: 직접 PCT 출원을 하거나,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파리협약에 정해진 12 개월의 기간 이내에 PCT 출원을 할 수 있으며, PCT 출원은 모든 PCT 체약국에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1] 체약국 목록은 WIPO 웹사이트(https://www.wipo.int/ko/web/pct-system/pct-contracting-state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 및 PCT 루트의 비교



3) 특허협력조약은 누가 이용하나요?

국제적으로 특허보호를 받고자 하는 세계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이 특허협력조약(PCT)을 이용합니다. 중소기업(SME) 및 개인 발명자도 PCT 를 이용합니다. PCT 연례보고서(https://www.wipo.int/ko/web/pct-system/activity/index 참조)에 연간 PCT 최다 출원인 목록이 게재됩니다.

출원

4) 국제특허출원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출원인의 국제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일 획득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일반적으로 모든 PCT 체약국에 대해 국내특허출원(및 특정 지역특허출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나아가 모든 PCT 체약국에 구속력이 있는 조약 및 규칙에 명시된 특정 방식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각기 다른 국내(또는 지역) 방식요건에 맞추기 위한 조정 작업(및 이에 따른 비용)이 불필요해집니다.

5) PCT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PCT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라면 국제특허출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출원에 기재된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 중 한 명만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6) 국제특허출원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대개 국내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국가안보조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WIPO 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두 관청 모두 PCT “수리관청”의 역할을 합니다. ARIPO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OAPI 방기 협정(Bangui Agreement), 유라시아특허협약(EAPC) 또는 유럽특허협약(EPC)의 체약국 국민 또는 거주자는 해당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당해 지역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7) 전자적으로 PCT 출원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출원인은 전자적으로 PCT 출원을 합니다. PCT 전자출원을 인정하는 관할 수리관청에는 전자형식으로 PCT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에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자출원 방법은 수리관청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수리관청에서 WIPO

웹서비스(ePCT)를 통한 출원을 인정하는데, ePCT 는 입력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입력 내용의 오류나 불일치 사항을 알려 주어 출원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련 조치의 기한을 모니터링하는 등 출원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 특정 PCT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PCT 전자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pct.wipo.int/ePCT/about-epct.xhtml?lang=k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년 7 월 1 일부터,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의 서면 제출을 더 이상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수리관청에서는 국제출원일을 확보하거나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서면 제출을 계속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일정 기간 내에 출원 서류를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의 역할을 하는 국제사무국은 여전히 서면 제출을 인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수리관청의 출원 요건에 대한 정보는 *PCT 출원인 가이드*(https://www.wipo.int/en/web/pct-system/guide/index) 부속서 C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PCT 국제출원 및 처리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국내단계 진입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PCT 출원인은 국제출원 시 통상적으로 세 종류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a) 국제출원료 1,330 스위스프랑 [2]

(b) 선택한 국제조사기관에 따라 약 150~2,000 스위스프랑 [2]의 조사료

(c) 수리관청에 따라 다른 소액의 송달료

국제특허출원은 모든 PCT 체약국에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및 지역 관청에 개별 출원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국제단계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PCT 수수료에 관한 추가 정보는 수리관청, PCT 수수료 웹페이지(https://www.wipo.int/ko/web/pct-system/fees/index), *PCT 출원인 가이드* 및 *PCT 뉴스레터*(질문 29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 진입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특허 허여 전에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출원 번역료, 국내(또는 지역) 관청 출원료 및 현지 특허 대리인 또는 변리사의 선임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관청에서는 국제단계에서 이미 수행된 작업을 고려하여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내출원료를 국내 직접출원의 경우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념할 점은 특허 취득에 PCT 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여된 모든 특허에 대해 출원인은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국에 유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 PCT 국제출원제도에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나요?

전자출원을 하는 모든 출원인은 제출유형 및 제출된 출원서의 형식에 따른 PCT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7 참조).

또한 개발도상국 출원인의 PCT 제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출원하는 자연인에게는 국제출원료를 비롯한 특정 수수료에 대해 9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3] 출원인이 국제연합의 분류상 최빈개도국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해당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9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상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2026 년 7 월 1 일 적용금액

3 해당 국가의 전체 목록(https://www.wipo.int/documents/d/pct-system/docs-en-fee-reduction.pdf) 및 2017 년도 PCT 총회의 해석(https://www.wipo.int/ko/web/pct-system/fees/2017_fee)을 참조하십시오.

출원인이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일부 국제조사기관에서도 국제조사료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guide/index 부속서 D 참조).

일부 국내 또는 지역 관청은 자연인,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SME)을 대상으로 국내단계 진입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guide/index 해당 국내장(章) 참조).

10) PCT 절차에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대개 출원인은 개별 특허청에서 국내단계 절차를 시작하고 국내단계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국제특허출원일로부터 추가로 최대 18 개월(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특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통상 30 개월 – 질문 11 참조)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질문 26 참조).

이러한 추가 기간은 특허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특허 취득 가능성 및 발명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발명의 기술적 가치 및 상기 국가에서 지속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특허 출원의 최선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만료될 무렵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출원인은 언제든지 국내단계 조기진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단계에서는 각 특허청이 국내 또는 지역 특허법, 규칙 및 관행에 따라 출원을 심사하므로, 특허 심사 및 허여에 소요되는 기간은 특허청마다 다릅니다.

11) 선특허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은 먼저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에 국내 또는 지역 특허출원을 하고, 상기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 개월 이내(파리협약에 정해진 기한, 질문 2 참조)에 PCT 국제출원을 합니다.

선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 그 사이에 다른 출원, 발명의 공개 또는 판매 등 어떠한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특허가 무효화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12) 국제특허출원은 어느 언어로 할 수 있나요?

국제특허출원은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언어 중 어느 언어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를 수행할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언어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해 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리관청은 국제특허출원이 공개되는 언어인 “공개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국제조사를 수행할 관할 국제조사기관(질문 13 참조)이 인정하는 언어를 적어도 하나는 국제출원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인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PCT 국제조사와 공개를 위해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언어가 언제나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므로, 출원인은 이러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13)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는 어느 관청이 수행하나요?

PCT 체약국이 지정한 국제조사기관(ISA)은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이집트, 핀란드,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4], 필리핀,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및 미합중국의 국내관청, 그리고 유라시아 특허청(EAPO), 유럽특허청(EPO), 노르딕특허기구(NPI), 비세그라드 특허청(VPI) 등의 지역관청입니다. 어느 국가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특정 국제조사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국제출원이 제출된 수리관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수리관청에서는 둘 이상의 관할 국제조사기관 중에서 택하도록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출원인의 수리관청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언어, 수수료 등에 관한 서로 다른 요건을 고려하여 그중 한 국제조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4) PCT 국제조사는 무엇인가요?

PCT 국제조사란 대다수의 특허출원이 제출되는 언어(중국어, 영어, 한국어 및 일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관련 특허문헌 및 기타 기술문헌에 대한 양질의 조사를 말합니다. 참조할 문헌에 대하여 PCT 에 명시된 기준,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특허청인 국제조사기관의 일관된 조사방법과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 의해 조사의 품질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 및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제시됩니다(질문 15 및 18 참조).

15) 국제조사보고서는 무엇인가요?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출원에 개시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선행기술(공개된 특허문헌 및 기술분야 학술 논문 등)의 인용목록으로 주로 구성됩니다. 보고서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비자명성)이라는 주요 특허성 판단 기준 측면에서, 나열된 각 문헌이 가질 수 있는 관련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은 조사보고서와 함께 특허성에 관한 견해서를 작성하며, 이 견해서는 출원인에게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질문 18 참조).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는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출원인에게 송부됩니다.

16) 국제조사보고서에는 어떤 가치가 있나요?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 PCT 체약국에서의 특허 취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국제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출원인에게 유리한 경우, 즉 인용문헌(선행기술)이 특허의 허여를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발명의 보호를 희망하는 국가들에서 출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출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예를 들어, 발명의 신규성 및/또는 진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들이 인용된 경우),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상기 문헌들과 보다 명확히 구별되도록)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하고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 전에 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17)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가 수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국제조사는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 수행됩니다. 그러나 국제조사기관이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출원이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할 의무가

[4] 멕시코 산업재산기관(IMPI)은 국제조사기관(ISA)/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대상을 다루는 경우 또는 명세서나 청구항, 도면이 충분히 명료하지 않아 국제조사기관이 유의미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이 부분적 조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조사기관이 보기에 국제출원에 다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출원인이 추가 발명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추가조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란 무엇인가요?

모든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발명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비추어 특허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출원인에게 송부되며, 국제출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출원인이 조사보고서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허 취득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상기 견해서는 해당 출원이 공개되는 것과 동시에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질문 23 참조)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견해서는 국제단계 종료 시 영어 번역문과 함께 국내(또는 지역) 특허청에 제공되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1 장)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특허 허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출원인이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각 국내관청 또는 지역관청의 소관이며,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1 장)는 해당 관청에서 고려되기는 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

19) PCT 보충적 국제조사는 무엇인가요?

보충적 국제조사 절차를 이용하면 출원인은 국제조사(“주 국제조사”)에 더하여, 하나 이상의 보충적 국제조사가 주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다른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각각 수행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조사를 청구하면 조사 대상 문헌의 언어적·기술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국내단계에서 새로운 특허문헌이나 기타 기술문헌이 발견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무엇인가요?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통상 내용과 외관이 주 국제조사보고서와 유사하며, 국제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문헌 및 기타 기술문헌의 인용목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국제조사보고서에 이미 인용된 문헌은, 보충적 국제조사에서 발견된 다른 문헌들과 함께 검토할 때 새로운 관련성을 갖게 되어 다시 인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시 인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에 주 국제조사보고서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국제조사의 경우와 달리,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에는 견해서가 함께 작성되지 않기 때문이며,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의 추가적인 설명은 인용된 문헌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공개

21) PCT 국제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WIPO 는 우선일로부터 18 개월 만료 직후(그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을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공개합니다. PCT 국제 출원은 PATENTSCOPE(www.wipo.int/patentscope/search/ko/structuredSearch.jsf)에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PATENTSCOPE 는 완전한 검색 기능을 갖춘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유연한 다언어 인터페이스와 번역 도구를 제공하여 사용자와 일반인이 공개된 출원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2) 제삼자가 국제출원 파일에 포함된 서류들에 접근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언제 가능한가요?

국제공개(우선일로부터 18 개월 후) 전까지는 출원인이 요청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제삼자가 국제출원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출원인이 출원의 취하를 희망하여 국제공개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국제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제삼자의 접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및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 의견서 등 국제출원 파일에 포함된 특정 서류들도 국제출원과 함께 PATENTSCOPE 에 공개됩니다.

국제예비심사

23) 국제예비심사는 무엇인가요?

국제예비심사는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두 번째 평가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질문 18 참조).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제시된 결론에 대응하기 위해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비심사 절차는 국내단계 진입 전에 심사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심사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국제예비심사 절차에서 출원인은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과 면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제예비심사 절차의 말미에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 제 2 장)가 발행됩니다.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은 앞서 언급한 국제조사기관들입니다(질문 13 참조). 하나의 PCT 출원에 대해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수리관청에서 제공받거나, *PCT 출원인 가이드* 및 *PCT 뉴스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2 장)에는 어떤 가치가 있나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2 장)는 출원인, WIPO 및 국내(또는 지역) 특허청에 제공되며, 조사가 이루어진 각 청구항이 국제 특허성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견해로 구성됩니다. 상기 보고서는 (대개 보정된 출원에 대한) 특허 취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충실한 근거를 제공하며, 보고서의 내용이 출원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국내 및 지역 특허청에서 출원을 계속 진행할 보다 탄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만 특허 허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출원인이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각 국내관청 또는 지역관청의 소관이며,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2 장)는 해당 관청에서 고려되기는 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국내단계

25) 국내단계에는 어떻게 진입하나요?

국제출원을 더 진행할지 여부와 어느 국가에서 진행할지를 결정한 후에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에는 국내수수료 납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출원의 번역문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대다수의 PCT 체약국 특허청에서는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만료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국내단계 진입과 관련하여 현지 대리인의 선임 등 다른 요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단계 진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PCT 출원인 가이드*의 *국내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수수료 및 국내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동 *가이드*의 PCT 체약국별 국내장(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 국내단계에서 제 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해당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이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해당 관청이 수행하는 심사는 PCT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추가 정보

27) 특허협력조약에서 WIPO 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WIPO 는 특허협력조약을 관리하고, PCT 총회, PCT 실무그룹 및 국제기관회의(MIA)와 같은 회원국 조직의 사무국 역할도 합니다. 나아가, 제출된 각 PCT 출원에 대해 WIPO 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모든 출원서류의 접수 및 보관
- 방식심사의 수행
- WIPO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PATENTSCOPE 를 통한 국제출원의 공개
- 조약 및 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른 PCT 출원 관련 정보의 공개
- 필요 시 PCT 출원의 일부 및 특정 관련서류를 영어 및/또는 프랑스어로 번역
- 관청 및 제삼자에 서류 송달
- 요청 시 관청 및 사용자에 법률 자문 제공

또한 WIPO 는,

- PCT 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 기존·신규·잠재적 체약국과 해당 관청에 지원을 제공하고,
- 국내 제정법에 특허협력조약을 반영하고 체약국 특허청의 내부절차를 수립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며,
- *PCT 출원인 가이드* 및 *PCT 뉴스레터*를 발행하며,
- PCT 관련 정보를 제작하여 PCT 웹사이트와 웹세미나, 그리고 전화 및 이메일 지원을 통해 이를 전파하고,
- PCT 세미나 및 교육 과정을 조직하고 제공합니다.

28) 특허협력조약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PCT 제도는 출원인, 특허청 및 일반 대중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a) PCT 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출원인이 외국에서 발명의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보고, 각국에서 현지 특허대리인을 선임하며, 필요한 번역문을 준비하고, 국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18 개월 더 주어집니다.

(b) 출원인의 국제출원이 PCT 에 명시된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PCT 체약국 특허청은 출원을 처리하는 국내단계에서 방식요건상의 이유로 출원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c)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는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대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출원인이 향후 진행 방향에 관한 사업상 결정을 내리는 데 강력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d) 출원인은 선택적인 국제예비심사절차 중에 국제출원을 보정하고, 심사관과 대화하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고, 각국 특허청에서 처리가 시작되기 전에 출원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e) 국제출원에 동반되는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로 인해 국내단계에서 특허청들의 조사 및 심사 작업이 현저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f) PCT-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 또는 유사 협정을 맺은 체약국에서 국내단계의 심사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https://www.wipo.int/en/web/pct-system/filing/pct_pph 참조).

(g) 각 국제출원이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청구된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을 제삼자가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h) 출원인에게 온라인 국제공개는 자신의 발명을 세계에 공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출원인은 PATENTSCOPE 에서 실시계약 체결 의향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발명을 홍보하고 잠재적 실시권자를 찾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i) 일반적으로 국제 처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업무는 각 관청에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출원인은 서류 준비, 송달 및 번역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선권서류를 여러 부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j) 국제단계 말미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출원인은 PCT 출원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발명의 보호를 추구하고, 각국에서 현지 특허 대리인을 선임하며, 필요한 번역문을 준비하고, 국내 수수료를 납부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특허협력조약은,

- 전 세계 특허출원의 문턱을 낮추고,
- 다양한 방식요건 충족 절차를 간소화하며,
- 다국적 특허보호에 수반되는 주요 비용의 지출을 유예시키고,
- 특허 여부 결정에 강력한 기초를 제공하며,
- 다국적 특허보호를 추구하는 세계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이 이용합니다.[5]

29) PCT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PCT 웹사이트(https://www.wipo.int/ko/web/pct-system/)와 다양한 PCT 간행물에서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PCT 출원인 가이드*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guide/index)
- *PCT 뉴스레터*(월간) (https://www.wipo.int/ko/web/pct-system/newslett/index)
- *PCT 하이라이트*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highlights/index)
- *PCT 에 대한 이해* 비디오 시리즈 (https://www.wipo.int/ko/web/pct-system/training/training_1)
- *PCT 원격학습과정* (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en&cc=PCT_101E#plus_PCT_101E)
- PCT 교육 (https://www.wipo.int/ko/web/pct-system/training/index)

PCT 국제특허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출원인은 자국내 자격을 갖춘 변리사나 특허 대리인,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에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5] 화웨이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퀄컴, LG 전자, 닝더스다이, 파나소닉, LG 에너지솔루션, BOE 테크놀로지 그룹, 베이징 샤오미 모바일 소프트웨어, 미쓰비시전기, 캘리포니아대학교, 칭화대학, 텍사스 대학교 시스템 이사회, 릴런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저장대학, 미시간대학교, 도호쿠대학교 등

PCT 정보 서비스(PCT 관련 일반 문의사항)
전화: (41 22) 338 83 38
이메일: pct.infoline@wipo.int

WIPO 에 직접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CT Receiving and Processing Sec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전화: (41 22) 338 92 22

이메일: ro.ib@wipo.int
웹사이트 주소: https://www.wipo.int/ko/web/pct-system/filing/filing
ePCT: https://pct.wipo.int/ePCT/about-epct.xhtml?lang=ko
WIPO IP 포털: https://ipportal.wipo.int/